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921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921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나115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88936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6.선고 2013나11514 판결

판결선고 2015.1.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 c,d,e,g,k,l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해우이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와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통병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7.13.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5.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나.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c,d,e,g,k,l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을 당한 자로부터 입금을 받는 데계좌가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거나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이 현금카드 ,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에 의한 방자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피고 j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고 대법관 김○○